

평화공동체운동본부 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약칭 ‘기장평화운동본부’)라 칭한다.

제2조 (소재)

본회의 사무실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안에 둔다.

제3조 (목적)

평화공동체운동본부는 6·15 공동선언으로 새로워진 남북관계의 변화에 맞추어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교회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며 동북아시아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1.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남북교류 협력 사업
2. 북녘 동포 지원 사업
3.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의 평화로운 삶을 위한 지원 사업
4.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 협력 및 교류 사업
5. 한민족 평화증진을 위한 교육 사업
6.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국제 협력 사업
7.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반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이나 교회(단체)로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입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지니며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제3장 조직 및 회의

제7조 (조직)

본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임원회, 사무국을 상설하고 특별위원회와 정책실, 고문 및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 (운영위원회)

본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할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 조직은 총회 평화통일위원회에서 한다. 단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운영위원은 총 100명 내외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운영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임원회의 요구로 열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1) 활동 계획
 -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3) 집행위원회 구성 및 임원회 선임
 - 4) 특별위원회와 정책실의 구성
 - 5) 회원의 가입과 탈퇴
 - 6) 고문 및 지도위원 추대
 - 7) 감사 선임
 - 8) 기타 주요 업무

제9조 (임원회)

임원회는 본 회의 사업과 활동을 관장하는 기구이며 임원은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회계, 서기, 사무국장이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공동대표는 5인으로 하고 총회 총무와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공동대표가 되고, 3인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되 여성 1인을 포함한다.
2. 집행위원장, 회계, 서기 및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10조 (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는 본부의 사업과 활동을 주관하는 기구로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지역과 전문직능을 고려하여 20인 이하로 구성한다.

1. 집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집행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1) 구체적인 활동계획 수립 및 실행.
 - 2) 활동내용 평가와 신규 사업 제안.
 - 3) 회원 확대를 위한 활동.

제11조 (사무국)

사무국은 공동대표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한다. 사무국은 가장 총회 사무실 안에 둔다.

1. 사무국장은 제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인 이상의 실무 간사를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내규를 둘 수 있다. 단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2조 (감사)

감사는 본회의 재정업무를 감사하며 총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장 재 정

제1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14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사업 수익금 및 총회 지원금, 후원금으로 한다.

제5장 개정 절차

제15조 (개정)

이 시행세칙은 평화통일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1. 이 시행세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의 법규를 준용한다.

2004년 9월 제89회 총회 제정
2006년 9월 제91회 총회 개정
2012년 9월 제97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18년 9월 제103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